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인증조사 계획

<2025.4.23.(수), 인증평가센터>

□ 배경 및 필요성

○ 인증기준*에서는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활동 수행부서 및 인력에 대한 조사결과 판정 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8.1 ME3)및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7.1 ME3)

○ 처음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없어(등급 없음)* 별도 조사방법 적용 필요

*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조사방법

○ (**대상**)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통보 이력이 없는 신규 인증 의료기관

-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

○ (**적용기준**) 4주기 급성기병원 및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참고1)

구분	기준		
4주기 급성기병원	8.1	3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및 적격한 자가 있다.
2주기 재활의료기관	7.1	3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및 적격한 자가 있다.

○ (**조사방법**) 의료기관이 제출한 감염예방·관리 인력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등급 확인 및 적용

- (준비자료) 인증조사 전일 기준* 인력, 병상수** 관련 자료

* 통상 분기별 현황으로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을 산정하나, 신규기관은 최초 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전일 기준으로 설정

** 심평원에 요양기관현황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수를 산정, 신고 병상보다 운영병상이 클 경우 운영병상수로 함

< 감염관리 인력 관련 의료기관 준비자료 >

▸감염관리 인력의 감염관리실 배치 및 감염관리실 근무시간 관련 자료 ▸직무기술서(진료권한정의서), 경력(이전 소속기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포함 가능) 및 자격, 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등급 구분 세부내용 >

<table>
<tr><th>구분</th><th>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전담간호사 중 자격 및 경력 간호사</th><th>감염관리 의사</th></tr>
<tr><td>1등급</td><td>o 감염관리 전담간호사(150:1 이하)
o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자격 및 경력 간호사(500:1 이하)
-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또는
- 감염관리실 실무경력 3년 이상 인력 (경력은 1년 이상 연속하여야 함)</td><td rowspan="2">o 감염관리 의사(300:1 이하)
- 감염내과(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전문의 또는
- 최근 3년 이내 24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받고, 최근 5년 이내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전문의
※감염관리 전담의사 1인은 감염관리 의사 2인으로 산정</td></tr>
<tr><td>2등급</td><td>o 감염관리 전담간호사(200:1 이하)
o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자격 및 경력 간호사(600:1 이하)
-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또는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인력 (경력은 1년 이상 연속하여야 함)</td></tr>
<tr><td>3등급</td><td>o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자격 및 경력 간호사
<table>
<tr><th colspan="2">3등급 기준 구분</th><th>배치인력</th></tr>
<tr><td rowspan="5">종합병원</td><td>300병상 이하</td><td>1명 이상</td></tr>
<tr><td>301~900병상</td><td>2명 이상</td></tr>
<tr><td>901~1,500병상</td><td>3명 이상</td></tr>
<tr><td>1,501~2,100병상</td><td>4명 이상</td></tr>
<tr><td>2,101병상</td><td>5명 이상</td></tr>
<tr><td colspan="2">병원</td><td>1명 이상</td></tr>
</table>
※단,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td><td>o 감염관리 의사(300:1 이하)
- 감염내과(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전문의 또는
- 최근 3년 이내 24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전문의
※감염관리 전담의사 1인은 감염관리 의사 2인으로 산정</td></tr>
</table>

참고1 적용 기준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기준 8.1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상급	종합	병원	조사결과	
3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및 적격한 자가 있다.	S	필수	필수	필수	□상 □중 □하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 조사대상 : 감염관리 ST 관련 직원, 감염관리실 직원, 감염관리위원회 위원, 항생제 사용 관리 위원회 위원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별표 8의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별표 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 참고자료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2017)
-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020)

조사항목		구분	조사내용
3	[필수]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및 적격한 자가 있다.	S	<감염관리 ST> • (ST 관련 직원, 관련 자료 확인) - 감염관리 전담부서 조직도 및 부서 역할 확인 - 감염관리 인력의 직무기술서(진료권한정의서) 및 인사자료(경력 및 자격, 교육 이수 등) 확인 확인

판정기준(ME.3)

구분	상	중	하
상급 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150병상 이상)	- 의료법 준수(공통) · 전담부서 설치 · 적격한 담당인력 : 자격 · 배치 · 교육 이수 충족 · 적격한 전담인력 : 적격한 담당인력 중 1명 이상 - 감염예방 · 관리료 산정기준 · 상급 : 1등급 충족 · 종합 : 2등급 이상 충족 · 병원 : 3등급 이상 충족	- 의료법 준수(공통) · 전담부서 설치 · 적격한 담당인력 : 자격 · 배치 · 교육 이수 충족 · 적격한 전담인력 : 적격한 담당인력 중 1명 이상 - 감염예방 · 관리료 산정기준 · 상급 : 2등급 충족 · 종합 : 3등급 충족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병원 (100~149병상)	- 의료법 준수 · 전담부서 설치 · 적격한 담당인력 : 자격 · 배치 · 교육 이수 충족 - 감염예방 · 관리료 산정기준 : 3등급 이상 충족	- 의료법 준수 · 전담부서 설치 · 적격한 담당인력 : 자격 · 배치 · 교육 이수 충족	
병원 (100병상 미만)	- 전담부서 설치 - 적격한 전담인력 : 의료법의 자격·교육 이수를 충족하는 인력 1명 이상	- 담당부서 설치 - 적격한 담당인력 : 의료법의 자격·교육 이수를 충족하는 인력 1명 이상 ※ 부서, 인력 중 한가지만 전담인 경우에도 '중' 으로 판정	

* 전담부서 : 의료기관 조직체계 내에 정식으로 편제되어 있는 독립된 부서로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부서(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 속해있지 않아야 함)
* 전담인력 :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 담당부서/인력 : 감염관리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하는 부서/인력
* 적격한 인력의 요건 (의료법 참조)
  - 6개월 이상 배치된 인력의 당해 연도 교육 이수 계획만 있는 경우 : 전년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6개월 이내 배치된 신규인력의 교육 이수 계획만 있는 경우 : 전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담당인력만 배치하는 경우 : 자격 및 교육은 의료법 준용

□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기준 7.1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등급	조사결과
3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및 적격한 자가 있다.	S	정규	□상 □중 □하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 조사대상 : 감염관리 ST 관련 직원, 감염관리실 직원, 감염관리위원회 위원

○ 참고자료

-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별표 8의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별표 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조사항목		구분	조사내용
3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및 적격한 자가 있다.	S	• (관련 자료 확인) -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부서 조직도 및 부서 역할 자료 -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인력의 인사자료(경력 및 자격, 교육 이수 등) 및 배치 근거 자료 ✓ 전담(담당)인력의 업무분장, 발령, 임명장, 업무수행 자료 등으로 배치 확인 - 조사 시행 기간 중 마지막 날짜가 속한 분기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등급 내역 관련 자료

판정기준(ME.3)

<table>
<tr><th>병상 구분</th><th colspan="4">상</th><th colspan="4">중</th><th>하</th></tr>
<tr><td rowspan="4">150병상
이상</td><td>조직</td><td colspan="3">전담부서[1] 설치</td><td>조직</td><td colspan="3">전담부서[1] 설치</td><td rowspan="11">'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td></tr>
<tr><td rowspan="2">인력</td><td rowspan="2">배치</td><td>담당</td><td>3명 이상*
인원수 : 병상별 차등</td><td rowspan="3">인력</td><td rowspan="2">배치</td><td>담당</td><td>3명 이상
*인원수 : 병상별 차등</td></tr>
<tr><td>전담</td><td>담당 인력 중 1명</td><td>전담</td><td>담당 인력 중 1명</td></tr>
<tr><td>요건[2]</td><td colspan="2">① 자격(의사 ·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교육(16시간 이상)</td><td>요건[2]</td><td colspan="2">① 자격(의사 ·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교육(16시간 이상)</td></tr>
<tr><td colspan="4">감염예방 · 관리료 산정기준 : 3등급 이상 충족</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00~149
병상</td><td>조직</td><td colspan="3">전담부서[1] 설치</td><td>조직</td><td colspan="3">전담부서[1] 설치</td></tr>
<tr><td rowspan="2">인력</td><td>배치</td><td>담당</td><td>3명</td><td rowspan="2">인력</td><td>배치</td><td>담당</td><td>3명</td></tr>
<tr><td>요건[2]</td><td colspan="2">① 자격(의사 ·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교육(16시간 이상)</td><td>요건[2]</td><td colspan="2">① 자격(의사 ·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교육(16시간 이상)</td></tr>
<tr><td colspan="4">감염예방 · 관리료 산정기준 : 3등급 이상 충족</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100병상
미만</td><td>조직</td><td colspan="3">전담부서[1] 설치</td><td>조직</td><td colspan="3">담당부서 지정</td></tr>
<tr><td rowspan="2">인력</td><td>배치</td><td>전담</td><td>1명</td><td rowspan="2">인력</td><td>배치</td><td>담당</td><td>1명</td></tr>
<tr><td>요건[2]</td><td colspan="2">① 자격(의사 ·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교육(16시간 이상)</td><td>요건[2]</td><td colspan="2">① 자격(의사 ·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교육(16시간 이상)</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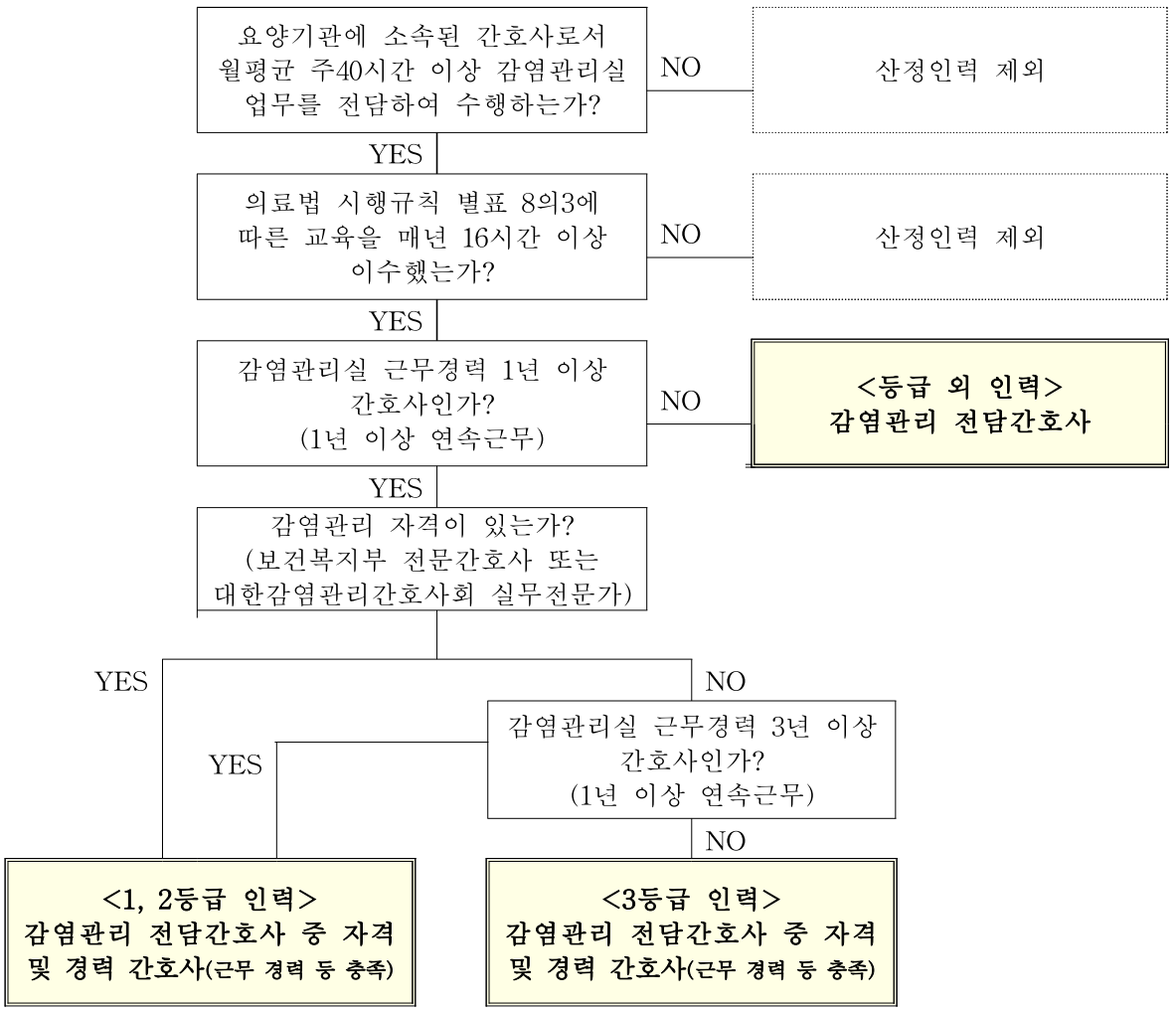
1) 전담부서 : 의료기관 조직체계 내에 정식으로 편제되어 있는 독립된 부서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업무 수행 부서

2) 인력의 요건 : ①, ②을 모두 충족할 때 인정함
- (인원수, 자격, 교육)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 준수
- (전담인력)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 (담당인력) 전담인력의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하는 자

※ 조사 방법(교육 이수 관련)
- 6개월 이상 배치된 인력의 당해 연도 교육 이수 계획만 있는 경우 : 전년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6개월 이내 배치된 신규인력의 교육 이수 계획만 있는 경우 : 전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참고2 감염관리 인력 확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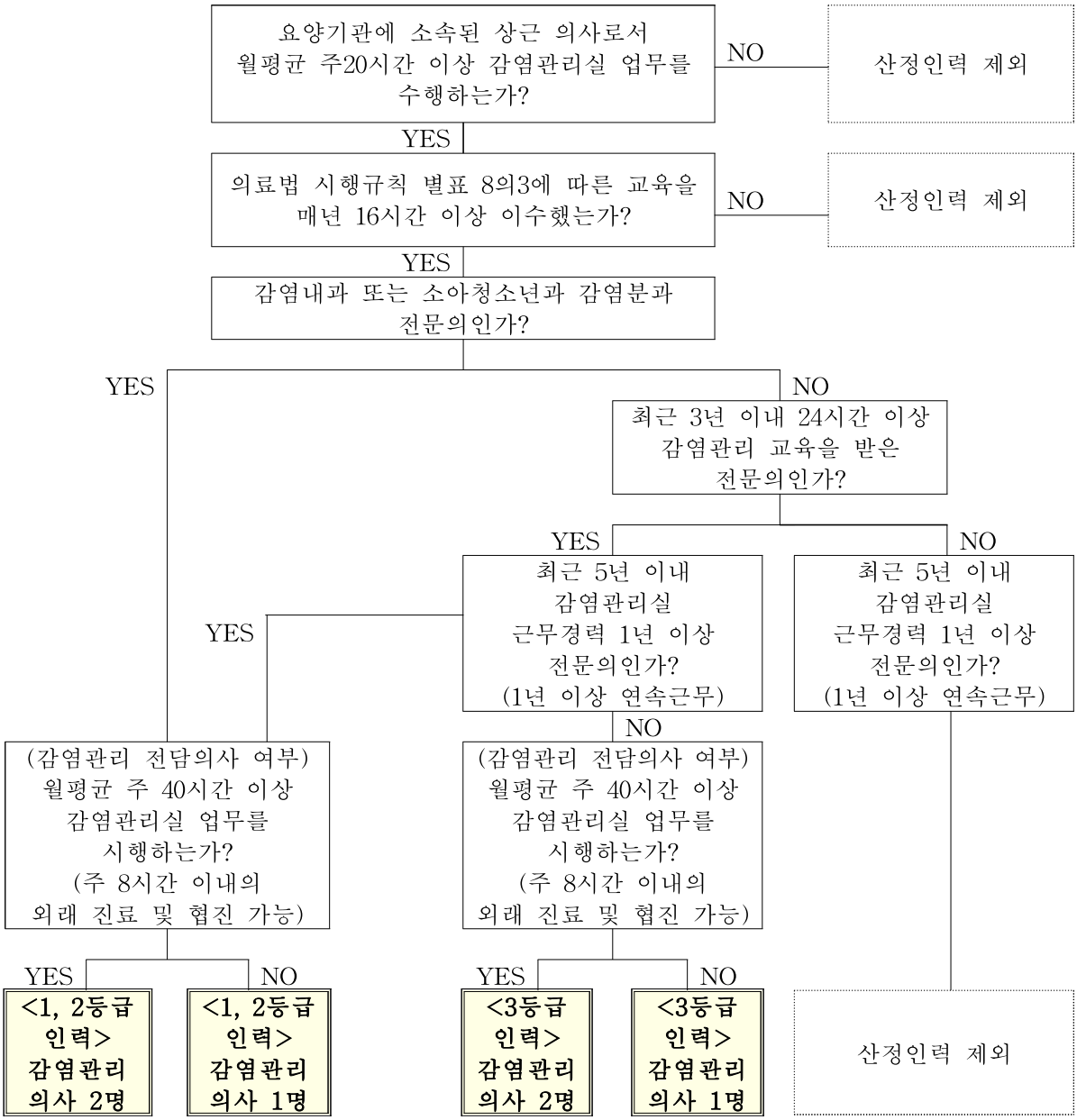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예시>

병상 및 인력현황			산정결과
종별		종합병원	o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 5명(140:1) → 1등급 요건 충족 o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자격 및 경력 간호사 >> 1명(700:1) → 1,2 등급 요건 미충족 4명(175:1) → 3등급 요건(종합병원 2명이상 충족) 충족
병상		700병상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1, 2등급 인력	1명	
	3등급 인력	3명	
	등급 외 인력	1명	
	계	5명	

<감염관리 의사>



<예시>

병상 및 인력현황			산정결과
종별		종합병원	ㅇ 감염관리 의사 1, 2등급 인력 >> 2명(350:1) → 1, 2등급 요건 미충족 ㅇ 감염관리 의사 1, 2, 3등급 인력 >> 3명(233.333:1) → 3등급 요건 충족
병상		700병상	
감염관리 의사	1, 2등급 인력	전담 1명	
	3등급 인력	1명	
	계	3명	

참고3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4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1일부터 '19년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table>
<tr><th>항 목</th><th>제 목</th><th>세 부 인 정 사 항</th></tr>
<tr><td></td><td></td><td>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3) 3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 ~ 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2)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1명 이상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아래 유형별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단, 3등급의 경우 ’23년 1월부터 적용)
<table>
<tr><th>유형별 분류</th><th>의료기관 인증</th></tr>
<tr><td>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td><td>급성기병원인증</td></tr>
<tr><td>병원</td><td>급성기병원인증, 재활의료기관인증</td></tr>
<tr><td>정신병원</td><td>급성기병원인증, 정신병원인증</td></tr>
<tr><td>치과병원</td><td>치과병원인증</td></tr>
<tr><td>한방병원</td><td>한방병원인증</td></tr>
</table>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 하여야 함.
(단, 병원, 정신병원 경우 ’19년 2월부터 적용, 치과병원·한방병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적용)
</td></tr>
</table>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4) 환자치료영역의 환경관리 및 청소와 소독을 수행하고, 환자치료영역의 물과 의료기관 내 음용수를 적절하게 관리·기록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